

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28.
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
- 발의자: 권숙자 의원 등 8명(김장관, 강한곤, 임미연, 도하석, 이영빈, 김기열, 고명욱)
- 발의일자: 2024. 11. 6.
- 회부일자: 2024. 11. 6.
-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(2024. 11. 28.)

2. 제안이유

- 관내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의 원활한 보행과 통행을 위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가로수 조성·관리 협의 사항(안 제5조)
- 가로수 조성·관리 승인 및 점검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
-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사항(안 제8조)
- 가로수 조성·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가로수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 - 「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제8조, 제17조, 제18조, 제20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4. 11. 6.~11. 17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제정 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전협의 및 승인과 가로수의 점검, 주민참여, 관리사업,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, 가로수 관리대장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로안전 확보 및 가로경관 개선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,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서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,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

법률」 및 「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무수행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·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관계법령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